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한·중 조정제도의 비교연구

신 군 재 *

〈목 차〉

- I. 서론
- II. 중국의 분쟁해결메카니즘
- III. 한국과 중국의 조정제도비교
- IV. 결론

* 신라대학교 국제통상정보전공 전임강사

I. 서론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해에는 전체 교역량이 63억 8천만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에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면서, 미국에 이은 2위의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지리적 여건과 양국의 산업구조 및 중국의 경제발전속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의 증가는 그 부산물로서 한·중 기업간 분쟁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중국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하여는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무역분쟁 해결방법으로는 소송이나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 중 소송보다는 국제적 효력 및 단심제로 인한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드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중재를 널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도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채증법칙을 요구하여 점차 소송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으며, 거래관계가 단절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강제집행상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중국실제 분쟁의 발생빈도에 비하여 중국기업과 분쟁을 중재로 이용하는 실적은 미비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송이나 중재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서 UNCITRAL, ICC, WIPO 등 국제기구에서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권장하고 있는 조정(mediation or conciliation)에 의한 한중간 분쟁해결방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당사자간의 무역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 관련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간의 무역분쟁 해결수단으로서 조정에 의한 해결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한중간 조정제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기업들이 조정으로 중국기업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국의

분쟁해결 메카니즘과 조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난 후, 한국의 대외무역법상 조정관련규정과 중국의 BCC(Beijing Conciliation Centre; 북경조정센터)의 조정규칙을 중심으로 문헌적 고찰을 통해 비교하고자 하였다.

II. 중국의 분쟁해결 메카니즘

1. 분쟁해결방법

(1) 강제적 해결

1) 소송제도

중국의 분쟁해결메카니즘은 상담, 협상, 조정, 중재 및 소송 등이 있다¹⁾. 이 중에서 소송과 중재는 공식적이면서 강제적인 해결방법인 반면에, 상담, 협상, 조정은 비공식적이면서 우호적인 해결방법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82년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을 제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1991년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 통과되었고, 1999년도에는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제간 무역분쟁은 중재나 소송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법원구조는 최하층법원인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및 최고인민법원 등 4급으로 나뉘어졌으며, 2심이 중심인 4급 2심제 구조를 취하고 있다. 특히 무역관련 분쟁을 다루는涉外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이 1심법원이 되나, 분쟁금액이 크고, 중대 사건일

1) Kuri Hua Wang, *Chinese Commerci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279

경우에는 고급법원이 1심이 될 수도 있다²⁾.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집정당(執政黨)으로서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 서방국가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소송제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³⁾. 첫째, 재판위원회가 있다는 점이다. 재판위원회는 모든 법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직접적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중대하거나 어려운 사건 등에 대하여 토론하여 결정을 내리는데, 담당 합의부나 독립 법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둘째, 재판감독제도이다. 재판감독은 법률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나 결정에 확실히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 법원의 법원장, 상급법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사건 당사자도 상급법원 등에 위와 같은 이유로 사건의 재심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소송은 비록 2심 재판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재판감독 절차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배심제도이다. 중국의 배심제도는 미국의 배심제도와는 달리, 사회주의 균중노선에 따라 인민대중을 대표하는 인민배심원이 법관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이다.

넷째, 합의재판부에 의한 재판이다. 독립법관(단독판사)에 의한 재판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여 다툼이 심하지 않은 간단한 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 중재제도⁴⁾

-
- 2) 한국수출보험공사, “무역분쟁 사례를 통한 몇 가지 중국민사법률 소개” 「수출보험」, 2003, 3-4월호, p.30
 - 3) 이해완, “중국의 사법제도” in <http://chunma.yu.ac.kr/~j9917186/date-13.html>
 - 4) 중재는 당사자간 분쟁을 소송에 의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서 중재판정부가 당사자간 원만한 분쟁해결을 유도하여 화해판정을 내릴 경우에는 ADR에 가까운 해결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엄격한 채증법칙에 입각하여 판정을 지향할 경우에는 소송에 가까운 해결수단이라고 2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 등으로 중재규칙에 의한 엄격한 절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이하 중재법)은 개혁과 개방화와 더불어 외국자본을 유치하면서 외국인에게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제정되었다⁵⁾. 현행 중재법은 14개의 법률, 80여개의 행정법규, 200개에 달하는 지방법규에 의하여 실시되어 오던 중재를 1994년 전국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제정되었으며, 1995년 9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행 중재법은 중국의 자체적인 입법경험을 집약함과 동시에 UNCITRAL 모델법을 토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재관행 및 서구 국가들의 중재법, 뉴욕협약⁶⁾ 등의 국제조약 등에 나타난 장점을 골고루 참고하여 제정되었다. 중국의 중재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재법에 근거하여 형성되어 있으며, 중국의 중재법은 중재계약, 중재기관,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의 집행 등을 규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제간 각종 상거래를 중재로 해결하기 위한 섭외중재기관으로서 무역분쟁을 전담하는 CIETAC(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과 해상중재를 전담하는 CMAC(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중국해사중재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중국의 중재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CIETAC은 국무원 대외무역부의 감독단체인 중국국제상회에 설치되어 있어 시장경제국가의 중재기관처럼 완전한 민간단체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

둘째, 중재인 선정은 당사자에 의한 선정방식과 동위원회의 선정방식을 결합하였다. 당사자가 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을 선임하지 못할

차로 이루어져 소송화되어 가고 있으며, 화해판정의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강제적인 해결방법으로 분류하였다.

5) 1994. 8. 31.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의 심화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대외무역분쟁 및 외국기업과의 합자, 합작 투자 관련 분쟁의 중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6)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58)

경우 CIETAC의 주임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⁷⁾.

셋째, 기관중재만이 가능하며,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또한, 중국은 CIETAC에서 중재계약의 유효성 여부 뿐만 아니라 중재지의 선정권한을 갖고 있다⁸⁾.

넷째, 중재판정은 다수결에 의하여 판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 의장중재인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⁹⁾.

다섯째, 집행 단계에서의 법원의 실체적 심사를 한다. 법원의 실체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내 사건과는 달리 인민법원은涉外사법에서는 실체적 심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¹⁰⁾.

(2) 당사자간 우의적 해결

1) 우의적 협상

중국인 사회는 매우 강한 집단주의적이면서 상호의존적인 사회이고, 유교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아 중국인들은 갈등보다는 조화를 선호한다.¹¹⁾ 유교적 전통의 본질적인 면인 상호 의무는 개인의 개성을 제한하고, 관계라는 그물속에서 개인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¹²⁾. 따라서 협상은 조화와 좋은 관계를 선호하는 문화 및 다른 사람에 의한 강제적인 결정보다는 스스로 타협을 하도록 하는 중국인의 가치관에 가장 부합되는 분쟁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에 따라 중국법에는 협상의 의미에 대한 명분규정은

7)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31조

8)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16조 3항 및 중재법18조

9)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53조

10) 윤진기, “중국 중재법상의 문제점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중재논총 (1999-2000)」, 대한상사중재원, 2002, p.107

11) Diamant N.J.,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 Chin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4, No.4, August 2000, p.523.

12) Richard H. Solomon, *Chinese Political Negotiating Behavior, 1967-1984*, RAND, 1995, p.17

없지만, 특정 당사자의 관계에 관한 상업적인 성질에 관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교섭과 같은 의사소통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은 계약서에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조항을 합의했다 할지라도 분쟁해결의 제1단계는 우의적 협상, 제2단계는 조정, 제3단계는 중재를 진행하는 것으로 관례화하여 왔다¹³⁾. 따라서 중국인들은 법에 자신들의 분쟁을 호소하기에 앞서 먼저 당사자간에 토의를 시도하여야 한다¹⁴⁾. 즉, 계약에 우의적 협상이 다른 분쟁해결방법에 선행하여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우의적 협상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분쟁해결방법에는 호소할 수 없다.

2) 조정제도

국제상사분쟁에서 ADR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국에서도 전통적인 분쟁해결방법인 조정(중국에서는 調解라고 함)을 중재와 별도로 제도화하였다¹⁵⁾. 조정과 중재는 분쟁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법관이 아닌 제3자의 개입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조정에서는 분쟁당사자들이 조정합의서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나, 중재는 중재판정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 수단의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에서는 서구에서처럼 중재를 선호하기 보다는 중국 고대로부터 이용되어 왔던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과정을 현재도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다¹⁶⁾. 이는 첫째, 갈등보다는 조화를 선호하는 가치관 때문이며¹⁷⁾, 둘째, 민사관련법규가 적고, 재판은 형사사건 중심으로

13) Ellis S. L. & Shea L., "Foreign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International Trade Law Journal*, Vol.6, p.175.

14) Kuri Hua Wang, *op.,cit.*, p.280

15) 중국에서 무역관련 조정에 관련한 법률은 계약법(제128조), 협동합작투자법(제26조), 중재법 (제52조), CIETAC조정규칙(제46조-제50조), CMAC조정규칙(제26조) 등에 규정

16) Guy Olivier Faure, "The Cultural Dimention of Negotiation : The Chinese Case", *Group Decision and Negotiation*, Vol.8, i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9, p.206.

이루어졌고, 관치행정의 불철저로 촌락이나 동업자조합 등으로 민사분쟁을 민중자신이 장로 등의 권리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으며, 중국인의 국민성인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풍토 즉 소송벽을 교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이기도 하다¹⁸⁾.

중국에서는 조정인은 당사자들과 같이 마주 앉아 쟁점들을 토로하며, 타협점을 찾는 것이 조정의 목적이다¹⁹⁾. 중국에서의 조정과 관련된 원칙으로는 첫째, 조정은 중재 및 소송전에 진행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절차는 아니며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근거하여야 하며 둘째, 조정은 사실확정, 진위를 식별하고 공정성과 합리성 보장을 필수요건으로 하여 시행하며 셋째, 조정절차는 별도로 또는 중재 또는 소송심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²⁰⁾.

중국은 국제무역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서 BCC(Beijing Conciliation Centre : 북경조정센터)을 1987년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내에 설치되었다. 이 조정센터는 중국내에서도 조정제도의 정착을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서 국제사회와의 의사소통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의 조정센터와 업무협정을 독자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2. 중국의 무역분쟁 조정제도

(1) 소송과 중재제도의 한계

1) 소송의 한계

중국에서도 소송과 중재는 최종적인 해결방법이다. 따라서 당사자들

17) Diamant N. J., *op.cit.*, p.523

18) 윤진기, 「중국-국제분쟁해결가이드①」, 대한상사중재원, 1993.12, p.14

19) Kuri Hua Wang, *op.cit.*, p.282

20) 김병준, “중국의 섭외경제계약법과 그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100.

이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소송과 중재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외국인의 입장에서 중국 소송제도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의 힘이 약하다는 점이다. 중국은 공산당 1당 지배체제로 3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다른 국가보다도 법원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인민법원이 법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판사를 임명하고 파면시킨다. 한 예로서 Yu(1998)에 조사에 의하면, 모든 상사사건의 70%가 공산당 및 지방 정부관료의 의지대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고 하였다²¹⁾.

둘째, 지방보호가 강하다는 점이다. 중국의 법원은 월급, 주택 및 편익에 대하여 상응하는 지방정부기관에 의존한다. 이러한 재정적 의존으로 인해 판결에 공정성 보장이 어렵고, 법관이 지방정부에 예속되어 지방정부 압력을 거부하기 곤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강한 지방정부의 배경을 갖고 피고에 대한 집행을 거절하기도 한다²²⁾.

셋째, 판사의 자질부족이다. 중국은 개방화와 더불어 판사들의 자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많은 판사들은 아직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해 강제집행에 관한 규칙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²³⁾. 중국의 법관은 퇴역군인 등도 법관이 될 수 있어 법관의 자질과 능력이 서방국가에 비하여 현격하게 떨어진다.

넷째, 사법적인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법적인 시스템이 체계화되지 않아 절차가 번잡하고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결하지 못하고 법원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판결하기도 한다. 특히,涉外사건의 경우에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을 물어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동일 사안에 대하여 법원들간에 상호 다른 판결을 내리거나, 한 법원에서 압류한 제품을 다른 법원에서 압류하기도 하는 경

21) Turgut Guvenli & Rajib Sanyal, "Perception and management of legal issues in China by US firms",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Vol. 32, 2003, p.165

22) Randall Peerenboom,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China", *The China Business Review*, 2001 Jan.-Feb., p.11

23) *ibid.*, p.11

우도 있다²⁴⁾.

마지막으로 소송비용이 과다하다는 점이다. 기본비용인 안전수리비는 소송가액에 따라 결정되며, 현장검증비, 감정비, 공고비, 통역비 등 잡비가 공식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

이러한 소송의 한계로 인하여 White는 중국에 있는 외국기업들은 독립적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고 하였다²⁵⁾. 즉, 중국은 아직까지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매우 미흡하여 중국에 있는 외국기업들이 중국기업과 분쟁이 발생하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²⁶⁾.

2) 중재의 한계

중재는 단심제로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New York Convention(1958)에 의한 국제적 효력을 갖고 있어 국제무역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소송보다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중재는 무역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첫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 분쟁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부적합하며, 둘째, 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적 권리·의무(right-based procedure)에 바탕을 둔 엄격한 채증법칙에 입각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공식적인 절차로 이루어지며, 셋째, 중재는 신청취지를 작성할 경우 대부분 금전적 청구를 하고 이에 따라 중재비용을 산정함으로써 주로 금전적 청구의 사건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넷째, 중재제도는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중재판정을 내려질 경우 승소한 기업은 비록 단기적인 이익은 챙길 수 있지만, 향후 사업관계가 끊기는 문제점과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24) *ibid.*, p.11

25) Turgut Guvenli & Rajib Sanyal, *op.cit.*, p.162

26) *ibid.*, pp.161-162

특징으로 인하여 중재는 ADR의 본래 취지인 ‘승-승의 결과’보다는 ‘승-패의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중재판정 이후 당사자간 원만한 분쟁해결을 통한 신뢰구축으로 향후의 지속적인 거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한편, 중국에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중국중재제도의 특징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은 기관 중재만이 인정되어 중국내에서는 CIETAC 등 특정 중재위원회가 정해져야 하며, 반드시 해당 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따라야 한다. 또한, 중국의 중재위원회는 관할권을 심사할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당사자가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중재인을 선임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중재판정부에서 중재인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중재인이 결정권을 갖고 있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중재절차로 승소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즉, 강제집행을 위한 인민법원의 승인을 얻는데 있어서, 지방보호주의, 집행을 위한 사전전제조건에 대한 광범위한 법원의 검토 및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인 검토 등²⁷⁾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며, 중재절차중이나 판정 이후 피신청인이 자산을 다른 회사에 이전시키거나, 다른 제3자의 채무로 담보를 설정해둔다지 함으로써 집행이 곤란한 이유 등²⁸⁾으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재판정의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가 평균 23%에 이르고 있다.

27) Axel Neelmeiser, "Legal Prosecution in the PR China" Hamburg, 2002.9.18, p.15 in www.snb-law.de

28) Smith Richardson Foundation의 용역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던 Randall은 중재판정이 집행되지 않은 37건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 법적 이유로 중재판정이 거부된 경우는 18건(49%), 자산부족으로 인한 실무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경우는 16건(43%), 3건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나 자산부족의 사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ARI 보고서의 결과

Survey/Award Type	신청(A)	강제집행(B)	집행거절(C)	거절율(C/A)
1994 CIETAC중재판정조사	30	17	6	20%
1997 CIETAC중재판정조사	164	127	37	23%
1997 외국중재판정조사	14	10	4	29%

자료 : Randall Peerenboom,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China", The China Business Review, 2001 Jan.-Feb., p.1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개방화와 더불어 공산당 영도하의 인치사회에서 법치사회로 전환하고 있으나, 급속한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법적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소송이나 중재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가장 큰 문제는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여부 및 법원판결이나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2.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필요성

중국의 중재제도의 특징 내지 우위성중 하나는 조정과 중재를 결합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²⁹⁾. 즉, 조정과 중재의 절차는 중국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 중재기관인 CIETAC과 조정기관인 BCC(Beijing Conciliation Centre)는 비록 다른 기관이지만, 같은 건물에 있으며, 몇몇 직원들은 양 기관에서 모두 업무를 보고 있으며, 어떤 중재인들은 중재인이면서도 조정인 명부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CIETAC중재규칙에는 중재절차중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에서 조해(調解)라고 하는 조정은 전통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선호되고 있어 중재절차중에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29) Low Sui Pheng 翻譯 趙健, "中國哲學思想對遠東地區調解的影響", 2004.2.28 in <http://www.china-arbitration.com/3a1.asp?id=1307&name=商事調解&cateid=16> (2004.6.20방문)

있도록 하고 있다. Wall & Blum(1990)에 의하면, 소송을 좋아하는 미국인과는 달리, 중국인들은 분쟁이 있는 곳에서는 조정이 행해질 정도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가라고 하였다³⁰⁾. 따라서, 조정은 중국기업과의 발생한 무역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의 전통 및 가치관에 부합되는 해결방법이다. 중국인들은 중용을 통한 조화를 중시하여 극단적인 것을 싫어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제3자에 의뢰하도록 하는 극단적인 해결방법인 소송이나 중재에 의한 해결보다는 당사자들이 협상이 실패하였을 경우 조정에 의한 해결이 중국인의 가치관에 부합되는 해결방법이다. 이러한 예는 중국의 주요 법의 분쟁해결규정에서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의거하여 덜 공식적이고 비용이 저렴한 ADR에 의한 해결을 당사자에게 권장하고 있으며³¹⁾, 중국 민사소송법 제8장에는 소송절차중 조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 민사사건의 70%가 조정에 의해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³²⁾.

둘째, 비용이 저렴하다. 예로서 분쟁금액이 일백만위엔화일 경우, 중재비용은 청구금액의 4%인 반면에 조정은 1.75-2.5%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또한 최저 중재비용은 20,000위엔화인 반면에 조정은 1,500위엔화에 불과하다. 따라서 조정은 특히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 매우 적합한 해결방법이다³³⁾.

셋째, 간이한 절차로 신속히 해결하는 절차이다. 조정은 소송이나 중재처럼 공적인 절차에 따라 엄격한 채증법칙에 입각하여 제3자가

30) Diamant N. J., op.,cit., pp.523-524

31) Kuri Hua Wang, op.,cit., p.281

32) Raymond Yu, "Dispute Resolu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6, in <http://members.optushome.com.au/raymondyu/pub/papers/dispute.html>(2004.7.1.방문)

33) Kuri Hua Wang, op.,cit., p.290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지속적인 거래 등을 고려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특히 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분쟁당사자에게는 독립적 위치의 제3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분쟁해결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³⁴⁾. 즉,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을 경우 제3자의 개입은 분쟁자로 하여금 체면을 상실할 위험을 최소로 하면서 제3자에 의한 양보를 행하도록 할 가능성이 커지게 한다³⁵⁾. 이러한 장점으로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무역거래에서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소한 감정적인 문제로 발생한 분쟁이나 상호 계약내용의 해석 차이나 오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 비금전적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과 중국간 분쟁해결에 매우 적합한 분쟁해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제3자를 통한 해결이다. 중국에서 조정인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평하고 올바른(impartial and upright) 제3자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지식을 가진 조정인은 비타협적인 당사자들에게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는데 방해물을 제거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분쟁을 해결해주고 있다³⁶⁾.

한편, 중국에서의 조정은 CIETAC의 중재절차 중 조정, BCC의 조정, 합동조정제도³⁷⁾, 중국인민법원에 의한 조정³⁸⁾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³⁹⁾.

34) 이규진, “미국 ADR에 비추어 본 우리 나라 ADR”, 「중재」, 여름 제296호, 대한상사중재원, 2000, p.29.

35) Jeffrey Z. Rubin, “Model of Conflict Manage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50, No.1, 1994, p.41

36) Lucille M. Ponte & Ythomas D. Cavenag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Business, West Educational Publishing Company, 1998, p.102

37) 외국관련분쟁에 있어서 중국인 및 외국인 당사자들이 각각 조정인을 선정하여 합동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제도

38) 인민법원에 의한 조정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인민재판 전이나 인민재판 중에도 진행할 수 있다. 즉, 인민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조정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일단 당사자들이 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면 강제집행력을 부여해준다.

39) CIETAC(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중 조정 및 중국인민법원에 의한 조정은 조정결과로 합의가 되었을 경우 중재판정 내지는 판결이 내려져

Ⅲ. 한국과 중국의 조정제도비교

1. 제도적 측면

한국과 중국 모두 유교적 전통에 의하여 조화를 중시하는 사회이다. 그래서 소송이나 중재로 인한 해결보다는 조정에 의한 해결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조정은 민사소송법 및 소비자보호법 등과 같이 특정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또한 행정조치나 민원해결절차의 하나로서 각 관련법에 조정제도를 도입되어 발전하여 왔다⁴⁰⁾. 반면에 중국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보다 우호적이면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ADR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조정제도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한국과 중국은 이처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정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제도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독립적인 조정전담기관의 존재여부이다. 한국은 대외무역법에서 무역분쟁의 위탁기관으로서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업무를 위임하였다. 반면에 중국은 중국투자무역촉진위원회 및 중국국제상회내에 BCC를 CIETAC과는 별도로 설립하여 국제상거래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한국은 무역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행정조정의 일환으로 도입하여 대외무역법상 조정에 대하여 규정해놓음으로써,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별도의 조정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중국은 ADR의 기본취지인 당사자자치원칙에 따라 무역분쟁을 효율적으로 해

최종적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40) 2003년 5월 현재 32개의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독립기관인 BCC를 설립하였다. BCC는 자체적인 조정규칙을 제정하여 국제상거래분쟁을 규율하고 있다.

셋째, 조정인의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조정인의 역할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하고,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조력할 뿐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면서 당사자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주는 데 있다. 즉, 조정절차의 성공여부는 조정인에게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행정조정인 일환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위원회에 결정권한을 부여해주는 취지로 3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안을 만들어 당사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ADR의 기본취지에 따른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비용에 대한 결정이외에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타협을 하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조정인의 역할은 단순히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시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고식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⁴¹⁾. 그러나, 중국에서는 적극적인 분쟁의 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넷째, 중재와 조정과의 관계이다. 한국과 중국 기본적으로 중재와 조정은 별도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섯째, 합동조정 여부이다. 한국은 무역분쟁의 조정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조정업무면에서는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한 관계로 외국 조정기관과 별도의 조정협정을 체결할 수도 없어 외국과 조정업무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건수가 한건도 없다. 그러나, 중국은 조정센터가 독립되어 있어 외국조정기관과 조정협정을 체결하고 이러한 조정

41) 이주원의,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보고서」, 대한상사중재원, 2001, p.40

협정에 따라 합동조정을 행하고 있다.

여섯째, 적용되는 분쟁의 범위이다. 한국의 대외무역분쟁 조정의 대상은 무역거래자간 불품들의 수출과 관련된 분쟁 및 선적전검사와 선적전 검사기관간에 발생한 분쟁이다. 반면에 중국은 경제, 무역 해상 관련 비즈니스를 비롯하여 지적재산권분쟁 등 국제간의 교역을 촉진시키는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2. 조정규칙

(1) 조정의 사전단계

1) 조정합의

조정은 중재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분쟁을 제3자에게 의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지만 중재처럼 최종적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반드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조정에서는 각국마다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대외무역법 조정관련 규정에서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이나 사후 합의가 필요없이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⁴²⁾. 그러나, 중국은 조정합의를 전제로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즉, BCC조정규칙에 의하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간 사전에 조정합의가 있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 상대방의 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한 조정신청인의 조정신청서에 대하여 분쟁발생전이나 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⁴³⁾.

2) 조정인의 선정

42) 대외무역법 제41조제4항 또는 동법 제4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43) Conciliation Rules 2000 제2조

조정인은 당사자에게 해결을 강요하거나,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으나,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조정인은 첫째, 당사자의 의사소통촉진자로서 둘째,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도록 하는 과정의 통제자로서, 셋째, 대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당사자들의 해결안에 대한 평가자로서 그리고 합의조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매개자로서 조정과정중에 역할을 하여야 한다⁴⁴⁾. 한국과 중국은 조정인 선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두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후보로 위촉하여, 조정위원후보자명부를 작성·유지하고, 당사자의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조정인 명부에서 조정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3인의 조정인을 위촉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재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중국은 지명된 2명의 조정위원이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들은 단독 조정인은 선정하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만약 단독 조정인을 선정하기로 하고 선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정센터에서 지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⁴⁵⁾. 이는 중국에서의 조정은 중재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로서 제도화하기 위해 기관에 의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정인을 선정하는 기한에서도 한국은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⁴⁶⁾, 중국은 조정인 선정기한을 정하여 두고 있지 않다⁴⁷⁾.

이상에서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당사자들이 조정인을 선정할 권한이 없는 반면에 중국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알 수 있다.

44) Lucille M. Ponte & Ythomas D. Cavenagh, op., cit. p.111

45) 중화인민공화국 조정규칙 제12조

46)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47) 중화인민공화국 조정규칙 제11조

3) 조정과정

(1) 절차진행개요

중국의 조정절차는 조정인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며, 특별히 구속력있는 절차는 없다.

(2) 정보의 교환

서구의 조정제도에서는 조정인과 당사자들간에 개인적 접촉을 통해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얻곤 한다. 즉, 개별회의과정에서 분쟁당사자들은 조정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성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신뢰감을 갖게되면 솔직하고 진솔하게 조정절차에 협조하여 자신의 비밀스런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조정 관련 규정에서는 이러한 개별회의를 통한 정보의 교환보다는 공식적인 조정회의를 통해 정보를 얻고자 한다. 한국의 조정에서는 조정위원회는 회의중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⁴⁸⁾, 절차의 비공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⁴⁹⁾. 그러나, 중국은 조정인의 선택에 의하여 한 당사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타방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비밀유지를 요청할 경우는 조정인은 당사자의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⁵⁰⁾.

(3) 감정인 또는 외부 전문가 조언

한국과 중국의 조정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외부전문가의 기술적인 조언을 받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분쟁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⁵¹⁾. 또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⁵²⁾.

48)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49)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④항

50) 중화인민공화국 조정규칙 제19조

5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 ⑥ 항 중국 조정규칙 제15조

(4) 대리인 선정

조정인이 특정 회의에서 대리인의 참석을 제한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은 협상권한을 수권받은 실무대표나 변호사나 자문인으로 하여금 조정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조정인은 대리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조정절차중 대리인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중국은 대리인이 조정절차를 참여할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를 제출하면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⁵³⁾.

(5) 조정기간

한국에서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 구성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기간 내에 작성할 수 없는 경우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⁵⁴⁾. 그러나 중국에서는 조정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조정결과

(1) 조정의 종료

조정에서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루어지면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조정인과 각 당사자들은 서명을 하게 된다. 그리고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인은 적절한 다른 분쟁해결방안을 선택하여 권고할 수 있다⁵⁵⁾. 한국에서는 조정의 종료에 대하여 첫째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둘째,

5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⑦항

53) 중화인민공화국 조정규칙 제9조 제2항

5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00조(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정안 작성) 제①항

55) 김지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법적, 제도적 고찰-미국 ADR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12 ,p.76

조정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철회 한 경우, 셋째,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넷째,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섯째, 기타 조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⁶⁾. 중국에서는 첫째, 성공적인 조정이 이루어져 조정합의서(the conciliation statement)가 작성된 경우, 둘째, 조정인인 성공적인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조정절차의 종료를 서면으로 선언한 경우, 셋째, 당사자들이 또는 한 당사자가 조정절차가 종료된다고 조정인에게 서명하여 통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⁵⁷⁾.

(2) 조정합의의 효과

한국의 조정에서는 조정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⁵⁸⁾,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수락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조정 형태를 취하여 양당사자들 모두 조정안에 모두 동의할 경우 조정합의가 성립된다. 반면 에 중국에서는 의사결정방식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조정인이 조정회의를 통해 당사자들이 타협을 하도록 유도하고 양당사자들이 타협을 하였을 경우에 조정이 성립된다. 즉, 한국은 국내의 각 법에 따라 행해지는 행정조정을 무역분쟁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중재처럼 의사결정방식 등을 규정한 반면에 중국은 조정규칙에 조정위원회의 의사결정방식과 조정합의의 효과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는 조정인이 당사자들과 같이 마주 앉아 쟁점들을 토론하며, 타협점을 찾는 것이 조정의 목적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56)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09조(조정종료)

57) 중화인민공화국 조정규칙 제17조

58)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③항

<표 2> 한·중 조정제도 비교

		한 국	중 국
제도적 측면	기관	대외무역법의 위탁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	독립된 북경조정센터
	조정규칙	독립된 조정규칙없고 대외무역법예상 규정	북경조정센터내 조정규칙
	중재와 조정	중재규칙상 중재절차중 조정가능	중재규칙상 중재절차중 조정가능
	합동조정	없음	외국과 조정협정체결을 통한 합동조정
조정규칙	조정합의	필요없음	필요함
	조정인	조정인 명부유지 선정시 당사자합의 불필요 조정인 명부중에서 선정 3인의 조정인 선정	좌동 당사자합의가 있는 경우는 1인조정인가능하, 합의가 없는 경우, 조정인 명부중에서 선정 2인의 조정인 선정
	정보공개 여부	언급없으나, 비공개원칙	당사자에게 공개원칙
	외부 전문가	필요시 외부전문가조언	좌동
	대리인 참석	미명시	명시(Power of Attorney)
	조정결정	2인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언급없음
	조정합의 효력	단순 합의, 법적 구속력없음	좌동

이러한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면 이 합의는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고 계약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조정에 의한 합의는 비밀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조정이 실패하여 소송이나 중재를 진행할 경우에 조정중의 제안 등을 입증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조정에 의한 합의를 한 이후에 대하여 단순히 조정이 종료된다고 규정을 해두었다.

이상을 내용을 토대로 한국과 중국간의 중재제도를 비교하여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IV. 결론

본 연구는 날로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가 없을까?라는 차원에서 시도되었다. 최종적인 분쟁해결제도인 소송과 중재는 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판정 이후에는 국내기업이 승소판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집행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과의 문제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가 조정이다. 특히 중국은 조정을 하나의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제도화하여 국제간 분쟁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BCC(북경조정센터)를 설립하였고, BCC는 외국조정기관과의 조정업무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행정조정의 취지에 따라 무역분쟁의 해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조정기관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을 지정한 반면에 중국은 당사자자치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로서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BCC(북경조정센터)라는 독립된 조정기관을 설립하고 센터내에서 조정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기업과의 분쟁을 조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기업과 분쟁에 직면한 기업들은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보다 적합한 분쟁해결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금액이 적거나, 비금전적 청구이거나 지속적 거래를 원할 경우에는 조정에 의한 해결을 금액이 큰 경우에는 중재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기업과 거래시에는 가능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에 피고지주의에 입각한 분쟁해결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지주의에 의하여 중국에서 분쟁을 해결할 경우에는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BCC에 의한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금액이 큰 경우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하거나 한·중중재협정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을 삽입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조정도 협상의 연장이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하는 사전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여러 계층의 정부관료들과 판시를 맺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ADR제도의 정착화이다. 기업들이나 학자들이 조정제도가 국내에서 정착화될 수 있도록 조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행정조정의 틀에서 벗어나 당사자간 자체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조정제도를 정착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을 대한민국분쟁센터로 격상시켜, 국내적으로는 각 법마다 정해놓은 행정조정을 통합하고, 국제적으로는 중재협정이외에 ADR에 관한 협정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이 외국기업들과의 분쟁을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독립적인 분쟁해결센터의 설립이야말로 무역분쟁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병준, “중국의 섭외경제계약법과 그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김지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법적, 제도적 고찰 - 미국 ADR제도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12
- 성백영,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의 내용과 문제점 고찰 - 섭외중재제도를 중심으로 -”, 한중법학회 제18회 정례학술발표회 발표 논문, 1998
- 윤진기, 「중국-국제분쟁해결가이드①」, 대한상사중재원, 1993.12,
- 이규진, “미국 ADR에 비추어 본 우리 나라 ADR”, 「중재」, 여름, 대한상사중재원, 2000
- 이주원의,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보고서」, 대한상사중재원, 2001
- 이해완, “중국의 사법제도” in <http://chunma.yu.ac.kr/~j9917186/date-13.html>
- 한국수출보험공사, “무역분쟁 사례를 통한 몇 가지 중국민사법률 소개” 「수출보험」, 2003, 3-4월호
- Andrew Acland, “A Sudden Outbreak of Commerce Sence”, Hutchison Business Books Limited, 1990, p.18 in Von Bibra, D.H., “The Case for Mediation”, IPA Review, 1995, Vol. 48 Issue 1, p.36, in EBSCO HOST
- Axel Neelmeiser, “Legal Prosecution in the PR China” Hamburg, 2002.9.18, p.15 in www.snb-law.de
- Cyntbia E. Cohen and Murray E. Cohen, “Relative Satisfaction with ADR”,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57, No.4, Nov. 2002/Jan. 2003
- Diamant N.J.,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 China”, Journal of

- Conflict Resolution, Vol. 44, No.4, August 2000
- Ellis S. L. & Shea L., "Foreign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International Trade Law Journal, Vol.6,
- G.Hooper,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Sweet & Maxwell Co., Oxford, 1970
- Guy Olivier Faure, "The Cultural Dimention of Negotiation : The Chinese Case", Group Decision and Negotiation, Vol.8, i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9
- Jeffrey Z.Rubin, "Model of Conflict Manage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50, No.1, 1994,
- Jethro K. Lieberman & James F. Henry, "Lessons from the ADR Movement," 53 U. Clev. L. Rev, Spring 1986
- Kuri Hua Wang, Chinese Commerci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Low Sui Pheng 翻譯 趙健, "中國哲學思想對遠東地區調解的影響", 2004.2.28 in <http://www.china-arbitration.com/3a1.asp?id=1307&name=商事調解&cateid=16>(2004.6.20방문)
- Luciile M. Ponte & Ythomas D. Cavenag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Business, West Educational Publishing Company, 1998
- Martin, Peter B., "Medi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in a Multicultural Context : New Skills for Student Development Professionals", American World Association March 2000
- Neil J. Diamant,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 China",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44 No.4, 2000 August
- Randall Peerenboom,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China", The

- China Business Review, 2001 Jan.-Feb
- Raymond Yu, "Dispute Resolutio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6, in
<http://members.optushome.com.au/raymondyu/pub/papers/dispute.html>(2004.7.1.방문)
- Richard H. Solomon, Chinese Political Negotiating Behavior,1967-1984,
RAND, 1995
- Robert Coulson, Profession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1984
- Richard H. Solomon, Chinese Political Negotiating Behavior,1967-1984,
RAND, 1995
- Stephen B. Goldberg, Frank E.A. Sander, Nancy H Rogers, Dispute
Resolution: Negotiation, Mediation, and Other Process, Little
Brown & Co., 1992,
- Turgut Guvenli & Rajib Sanyal, "Perception and management of legal
issues in China by US firms",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Vol. 32, 2003
- UNCITRAL Conciliation Rules(1980)
<http://www.mofat.go.kr/ko/index.mof>
<http://www.ccpit.org/servlet/infosystem.ServletGoToInfosystemHome>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Medi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PRC

Koon-Jae Shin

Dispute plays a key role in maintaining the desirable trading performance.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problems of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and the uncertainty of legal system in PRC. Therefore, the Korean trading companies with Chinese companies should be more concerned with mediation. It's because mediation are more likely to be effective than arbitration and litigation to resolve disputes with chinese companies. This article investigates some differences of mediation between ROK and PRC, and suggests the following ways to resolve dispute. First, the Korean companies should utilize the mediation in small claim but arbitration in big claim. Second, Write a contract and insert mediation clause in BCC or the standard arbitration clause in KCAB. Third, the companies should be more concerned with prevention of dispute than dispute resolution. In conclusion, to expand mediation system into an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Korean Dispute Resolution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Key Words : Trade Dispute Resolution, Mediation, Korean
Company, PRC